

제165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면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3면
3.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종로구청장 제출) 18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9면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8
----------	------

제출년월일 : 2006. 7.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기구개편 및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별도 청사 필요시 신청사 건립 이
전이라도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을 지출
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종로구 총무과-5360(2006.5.9) 종로구 기구개편안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1)신·구조문 대비표

2)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3조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전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전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신청사전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전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전립기금”을 “구청사전립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필요한 경비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전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청사전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7조중 “심의를” “심의”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기금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사(이하 "구청사"라 한다)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u>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전립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u> 」----- ----- ----- ----- <u>구청사전립기금</u> ----- ----- -----
제2조(기금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 (생략)	제2조(기금의 설치) ①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필요한 경비</u> 에 사용한다. 1. ~ 4.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 ----- <u>경비</u> 에----- ----- 1. ~ 4. (현행과 같음) 5. <u>기구의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임대보증금</u>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u>서울특별시종로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 <u>구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 위원회</u> ----- -----.
② ~ ③ (생략) 1. ~ 4.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u>심의</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략)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u>기금 결산보고서</u> 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u>기금결산보고서</u> ----- ----- -----.